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들어서면 선거개혁 '도로아미타불'

4+1 협상에 한국당 꺼내든 '비례한국당'…비례의석 대폭 늘어

비례정당 속속 들어서면… "현재 병립형 선거제와 비슷한 결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비례한국당'의 출연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다.

한국당이라는 '분체' 정당에 지역구 표를,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에 비례 대표 표를 각각 따로 몰아달라며 호소하겠다는 복안이다.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이 한국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자 이러한 선거제도에 맞춰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묘수'를 짜낸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구상이 여야를 막론하고 실행되면 4+1 공조의 선거제 개편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4+1 협의체가 논의 중인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석으로 나눠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비례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워 연동률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나머지 비례 20석은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안(案)에도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지난 4월 페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원안(심상정 안)에 '연동형 캡'의 조건이 추가된 셈이다.

일단 원안은 정당 득표율(3% 이상)에 따라 의석수를 정하되, 지역구 당선 의석 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으면 비례대표로 부족분을 채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A당 의석수 = [(국회의원 총 300명) - (비례대표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 선자수)] × A당 비례대표 선거 득표비율 - A당 지역구 당선자수]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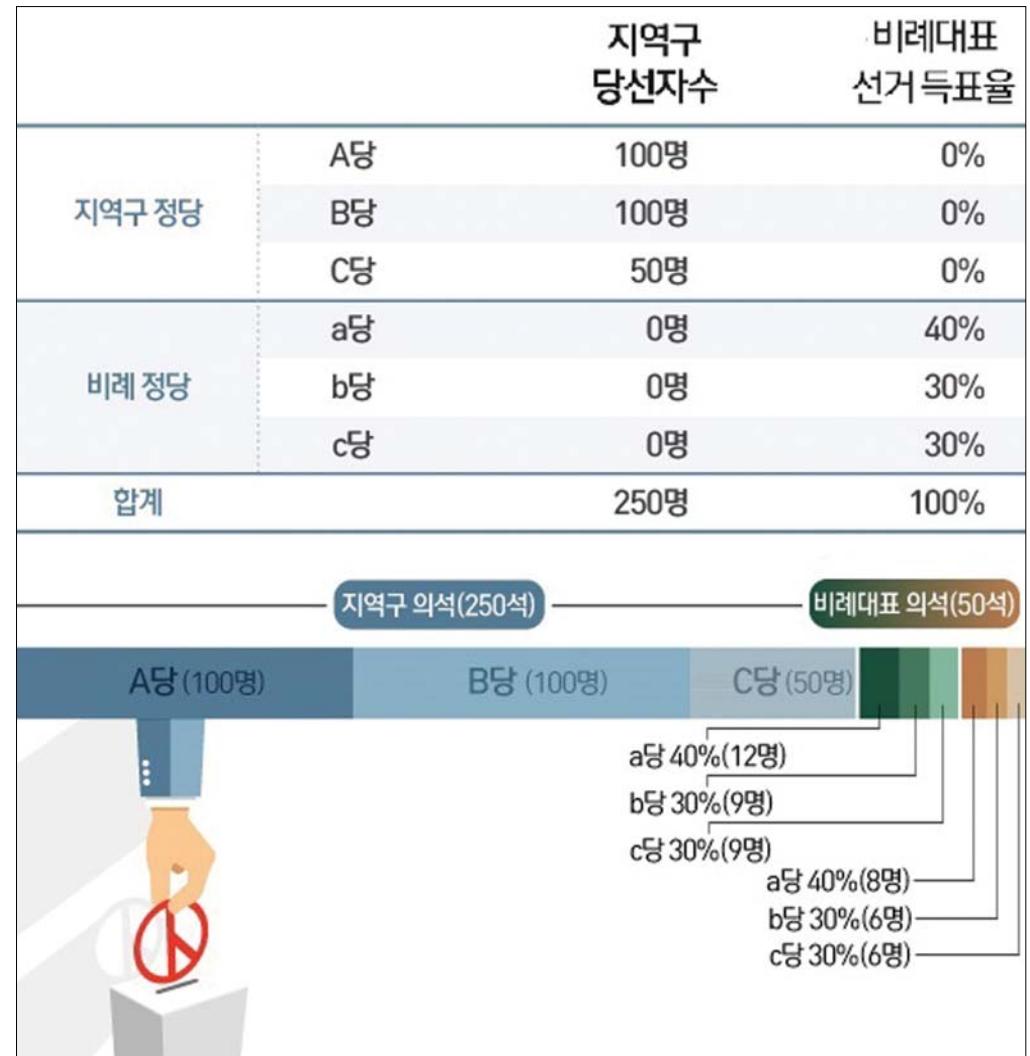
이 수식에 따르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들은 비례 의석을 획득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따로 분리해서 뽑는 위성 비례 정당이 따로 생기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역구 당선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많은 A당이 비례정당 'a당'을 신설할 경우 비례 의석을 고스란히 차지하는 게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지역정당 A당은 지역구 의석에 더해 a당의 비례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

A당은 물론 B당, C당 등 정당들이 모두 비례정당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

수식에 단순 대입하기 위해 △득표율 3% 미만 등 정당의 당선자수가 없고 △지역정당인 A·B·C당의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각각 0% △비례정당인 a·b·c당의 지역구 당선 각각 0석이라고 가정해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지역구 의석 250석은 A당(100석), B당(100석), C당(50석)이 나눠 갖고 △연동형 캡이 씌워진 비례 30석은 원안의 강제축소 조항을 유추적용(비례의석의 총합이 30석을 넘으면 각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 축소)하면 의석이 a당(12석), b당(9석), c당(9석)으로 나눠지며 △남은 20석 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a당(8석), b당



(6석), c당(6석)으로 배분된다.

결과적으로 보면 a·b·c당이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비례 50석을 나눠 갖는 효과가 생긴다.

연동형 비례제 효과가 사라지고 현재 선거제도인 병립형 비례제(지역구 의석을 구분해 뽑고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를 적용했을 때와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이에 정치권에선 비례정당들이 속속 들어설 경우 현재 선거제와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재로선 비례정당 구성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그러나 4+1 협의체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거대정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이 힘을 얻을 것으로 관측된다.

뉴스1

비례한국당 가능할까…선관위 "창당 가능, 지원범위 미정"

비례정당 등록에서 선거운동·정치자금 지원까지…길 열려 있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안 협상이 막바지 향해가면서 수세에 몰린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꺼내들며 반격에 나섰다.

'꼼수' 논란이 일고는 있지만 협행법만 놓고 보면 비례정당 설립이 가능하다는 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다. 기존 정당이 비례정당의 선거운동과 자금을 지원할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도 아니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정당 설립 자체가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뉴스1과 통

화에서 "중앙선관위가 어떤 정당의 창당을 허가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정당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기만 한다면 위성정당이라도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명시한 헌법 제8조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정당법은 정당에 필요한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즉 어떤 정당을 새로 만들기 위해선 정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당 명칭, 사무소 소재지 등을 신고하면 된다.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진 전국 5개 이상 시·도당 설립 등의 요건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4+1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비례한국당을 창당하겠다며 공공연히 '엄포'를 놓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1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좌파연합체력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재원 정책위의장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비례한국당 창당과 관련, "실질적으로 창당 절차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면서 "당명 후보 이야기도 나오지만 저희들이 그것까지 지금 준비하는 것은 아닌 것

으로 알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권에선 비례한국당이 설립되면 총선에서 비례의석을 확보한 뒤 본체격인 한국당과 합당 수순을 거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비슷한 사례로 18대 총선에서 정당득표율 13%를 기록한 친박연대가 거론된다. 당시 친박연대는 비례 8석을 얻은 뒤 한나라당과 합당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한국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비례 의석을 대폭 확보하는데 맞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도.

물론 비례정당이 따로 생기면 기존처럼 당이 하나였을 때보다는 선거운동과 정치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88조는 "다른 정당이나 선거구가 같거나 일부 겹치는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

동을 힘에 있어서 그 일부가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른 경우"라고 예의 단서를 달아두고 있다. '일부' 선거운동에 한해선 비례정당 등 다른 당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단 뜻이다.

기존 정당이 후원금 등의 형태로 비례정당을 지원하더라도 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정치자금법 14조는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비례정당 등 다른 당으로 후원금 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는 설명이다.

중앙선관위 측은 "비례정당에 대한 선거운동과 자금지원 방식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어서 현재로선 협행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다"며 "일단 비례정당이 설립되면 각 정당에 선거운동과 자금조달 방법과 관련해 방침을 세워 안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뉴스1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다?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